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0. 6. 25. 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0년 6월 5일

나. 발 의 자: 김화영 의원 외 7명

다. 회부일자: 2020년 6월 9일

라. 상정일자: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0. 6. 19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김화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영등포구 및 영등포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 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적용범위를 규정함(안 제1조~제3조)
-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계획 수립·시행을 규정함

(안 제6조)

○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,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(안 제12조 ~ 제1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임경태)

○ 본 조례안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,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, 총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.

-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노동환경 조성계획, 실태조사, 모범지침의 배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.
- 안 제12조부터 제16조에서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권리보장위 원회 설치 및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7조에서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사업 추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O 검토결과.

- 본 조례안은 악성 고객 증가 속에서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감정노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, 감정노동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, 직무소진이나 조직의 성과저하 및 이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,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 입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 또한,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및 산하 공공기관의 감정 노동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, 또 실효성 있는 모범지침을 마련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처우를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어야할 것이며, 고객의 권리와 직원보호를 동등하게 중시하는 조직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해 보임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

(김화영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4

발의년월일: 2020년 6월 일

발 의 자: 김화영 의원 외 7명

1. 제안이유

영등포구 및 영등포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적용범위를 규정함(안 제1조~ 제3조)
- 나.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계획 수립· 시행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라.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- 마.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배포, 권리보장 교육, 상담 및 보호,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 ~ 제11조)
- 바.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,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 ~ 제16조)
- 사. 감정노동 종사자 고용기관(단체)에 대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7조)

3. 제정안: "별첨"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『산업안전보건법』제 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집행

다. 입법예고 : 2020. 6. 1. ~ 6. 5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및 영등포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 종사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감정노동"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.
- 2. "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사용자(이하 "감정노동 사용자" 라 한다)" 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 이라 한다)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·출연기관, 구의 위탁기관,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하다.
- 3. "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(이하 "감정노동 종사자" 라 한다)" 란 제2호의 기관·단체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
- 4. "고객"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 종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- **제3조(적용범위)** 이 조례는 구 및 구 산하 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 종사자, 감정노동 사용자, 감정노동 종사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에게 적용하다.

- **제4조(구청장의 책무)**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 종사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**제5조(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존중)** 감정노동 종사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.
- 제6조(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계획)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, 감정노동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"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계획"(이하 "조성계획"이라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
 - 2. 감정노동 종사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
 - 3. 감정노동 종사자와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 종사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
 - 4. 조성계획 수립·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
 - 5.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**제7조(실태조사)** 구청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**제8조(모범지침의 배포)**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
 - 2.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

- 3.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
- 4.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
- 5. 그 밖에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③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무기관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감정 노동 사용자가 모범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.
- **제9조(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교육)**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③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교육에는 제8조에 따른 모범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제10조(감정노동 종사자 상담 및 보호)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 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, 법적조치 등을 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감정노동 종사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**제11조(건전한 노동문화 조성)**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.
-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 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- 제12조(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)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 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"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" 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1.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계획 수립 및 시행
 - 2. 보호대상 감정노동 종사자 기준 설정
 - 3.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사업
 - 4. 그 밖에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**제1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호선한다.
-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다만,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 - 1. 인권, 노동, 상담,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
 - 2. 인권, 노동, 상담, 직업의학 분야 정부기관, 비영리 민간단체·법인, 노동조합, 감정 노동 관련 국내외 기구 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
 - 3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
 - 4. 노동업무 관련 국장
 - 5. 노동인권분야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
 - 6. 그 밖에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**제14조(위원의 해촉)**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- 1.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- 2.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
- 3.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**제15조(위원회의 운영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다.
-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.
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 다만,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16조(수당 등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7조(지원)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 종사자 고용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